

의안번호	2200711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07.11.
추 계 번호	24C11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 (무상보육)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제2조 제6호1)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가정방문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의무규정
4	안 제49조의4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	(제1항)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3항,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가정방문보육교사”로 본다. (제2항)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임면·배치, 그 밖에 가정방문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11호)제2조제6호 “가정방문보육”이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을 말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무상보육) 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안 제36조(비용의보조등) 안 제49조의4(가정방문 보육교사의 자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 함)을 신설하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신청할 영유아의 수와 보육서비스 이용단가 및 재정보조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관련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구비한 ‘가정방문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을 도입하고 이의 비용을 법 제34조의 무상보육에 포함시킴
 - 개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가정보육이 실시되는 아동 중 ‘가정방문보육’을 받게 될 비율에 대한 추정과 가정방문보육 이용에 대한 보육료 단가, 재정보조비율 및 방식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
 -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을 실시중인 아동 중 일부가 ‘가정방문보육’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전환율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 － 또한, 가정방문보육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보육료 등 비용 및 재정보조비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기존 사업을 통한 유사사례 준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여성가족부)의 경우, 종일제·시간제, 취약가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율이 상이하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개정안과 달리 보육교사 자격을 필수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 단가 및 사업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어린이집은 개별보육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반'형태의 보육을 전제로 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준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
 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